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안내

직종분류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산림청고시 제2022-23호]

제3조(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2.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교육·학술·연구
3.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관리
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활동

공무원 임업 및 농업계열	화훼 및 식물원	대학 및 연구원
고시제3조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제3조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사	산림사업 법인	조경회사
고시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제3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제3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약회사	아파트 관리소	유관기관 조경관리 업무 수행자
고시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제3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제3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증명 방법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반드시 규정된 서식으로 제출**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사업체 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규정 서식 외 회사 자체발급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참고서류로만 활용함
- 담당 업무 내용란은 반드시 수목진료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야 함
- 해당 사업체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첨부서류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